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504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504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 상품은 장해(50%이상 장해, 60%이상 장해, 80%이상 장해, 3~100% 장해)를 보장하는 장해보장형과 재해사망 및 고도장해를 보장하는 상해보장형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한 비갱신형 보험으로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504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 무엇인가요?

A. 1.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504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합니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Q.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504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Q. 선납보험료 납입이 가능한가요?

A.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합니다.

Q.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 └ 1형 : 장해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 2형 : 상해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2. 보험기간

100세 만기, 110세 만기

3.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4.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1형(장해보장형)		2형(상해보장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0세 만기	5년납	만15세 ~ 75세		만15세 ~ 75세	
	7년납			만15세 ~ 73세	
	10년납			만15세 ~ 70세	
	15년납			만15세 ~ 65세	
	20년납			만15세 ~ 60세	
110세 만기	5년납	만15세 ~ 75세		만15세 ~ 73세	만15세 ~ 75세
	7년납			만15세 ~ 69세	만15세 ~ 73세
	10년납			만15세 ~ 67세	만15세 ~ 70세
	15년납			만15세 ~ 64세	만15세 ~ 75세
	20년납			만15세 ~ 60세	

5.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6개월납, 연납

6. 가입한도

구분	가입한도
1형 (장해보장형)	65세 이하 : 100만원 ~ 최대 7,000만원
	66세 이상 : 100만원 ~ 최대 4,000만원
2형 (상해보장형)	70세 이하 : 100만원 ~ 최대 5,000만원
	71세 이상 : 100만원 ~ 최대 3,000만원

※ 다만, 가입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에 가입한 보험가입내용 및 가입경로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7. 건강진단 여부

이 상품은 기존 다른 보험 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504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① 1형 (장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며, 매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 해당일에 총 120회 확정지급)	매월 2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6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며, 매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 해당일에 총 120회 확정지급)	매월 8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8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며, 매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 해당일에 총 120회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인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 ※ 50%이상 장애생활자금과 60%이상 장애생활자금, 80%이상 장애생활자금을 장애생활자금이라 합니다.
- ※ 50%이상 장애생활자금과 60%이상 장애생활자금, 80%이상 장애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매월 50%이상 장애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50%이상 장애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 ※ ‘매월 60%이상 장애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60%이상 장애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 ※ ‘매월 80%이상 장애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80%이상 장애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 ※ 장애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 장애생활자금을 지급받던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도 미지급된 장애생활자금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2형 (상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0,00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20,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나.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나.’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3.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라. 보험금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2년 이내)

◆ 보험료 산출기초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504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3.00%, 10년 초과 연복리 2.00%입니다.

2. 적용위험률

Q.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무배당 예정 질병 및 재해 장해 50%이상 발생률	0.000105	0.000315	0.000999	0.000032	0.000121	0.000380
무배당 예정 질병 및 재해 장해 80%이상 발생률	0.000030	0.000107	0.000365	0.000007	0.000023	0.000121
무배당 예정 경험 재해사망률	0.000115	0.000203	0.000351	0.000032	0.000039	0.000075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적용해지율

Q.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 A.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 2504'에 적용한 적용해지율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연 0.10% ~ 16.86%입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더나은 ABL안심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504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적용기초율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합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 1형(장해보장형)

(단위 : 원)

종류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048,800	0	0.0%	517,500	0	0.0%
6개월	2,097,600	0	0.0%	1,035,000	0	0.0%
9개월	3,146,400	0	0.0%	1,552,500	0	0.0%
1년	4,195,200	587,750	14.0%	2,070,000	163,100	7.9%
3년	12,585,600	5,209,450	41.4%	6,210,000	2,452,200	39.5%
5년	20,976,000	10,081,150	48.1%	10,350,000	4,863,600	47.0%
10년	41,952,000	22,743,500	54.2%	20,700,000	11,066,350	53.5%
20년	83,904,000	97,825,500	116.6%	41,400,000	47,632,900	115.1%
30년	83,904,000	116,798,500	139.2%	41,400,000	56,340,200	136.1%
40년	83,904,000	132,404,700	157.8%	41,400,000	57,467,500	138.8%

■ 2형(상해보장형)

(단위 : 원)

종류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3개월	1,207,500	0	0.0%	527,700	0	0.0%
6개월	2,415,000	0	0.0%	1,055,400	0	0.0%
9개월	3,622,500	0	0.0%	1,583,100	0	0.0%
1년	4,830,000	706,050	14.6%	2,110,800	169,300	8.0%
3년	14,490,000	6,008,150	41.5%	6,332,400	2,500,350	39.5%
5년	24,150,000	11,597,200	48.0%	10,554,000	4,956,450	47.0%
10년	48,300,000	26,140,200	54.1%	21,108,000	11,283,900	53.5%
20년	96,600,000	112,550,700	116.5%	42,216,000	48,686,300	115.3%
30년	96,600,000	134,741,400	139.5%	42,216,000	57,869,900	137.1%
40년	96,600,000	155,172,000	160.6%	42,216,000	60,245,500	142.7%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 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가입기준 : 40세, 월납)

구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1형 (장해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100세	20년	107.9%	104.4%	1,000
2형 (상해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100세	20년	97.7%	90.7%	1,000